

7.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 1998-555호 1998. 11. 26

개 정 이 유

외국인이 토지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에도 외국인의 임대사업등록을 허용하고,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무기간을 정함은 물론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의 매각시행절차 등을 정하고 기타 임대주택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주 요 골 자

- 가. 현행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내국인, 재외 국민에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의 주택임대사업은 불가능하였으나 이를 허용,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주택임대사업의 활성화 도모.
- 나.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무기간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임대 개실일부터 10년, 20년으로 구분.
- 다.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가격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매각가격산정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코자 함.
- 라. 임대주택의 임의 매각허용에 따른 매각 및 신고절차를 정함.